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의원·최혁진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33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서미화·최혁진·김 윤
이용선·천준호·송재봉
김준혁·김종민·윤종오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분

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편 제3장 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 및 제97조에 따른 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장(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제2항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

제46조 중 “許可를 얻어”를 “인가를 받아”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許可”를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設立許可”를 “設立인가”로 한다.

제53조 중 “許可”를 “인가”로, “許可書”를 “인가서”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許可”를 “인가”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7條(解散事由) ①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

② 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사원의 부존재
2.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한 해산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

제80조제2항 본문 중 “許可를”을 “인가를”로 한다.

제1편 제3장에 제4절의2(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합병과 분할

제96조의2(합병·분할) ① 법인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간의 합병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단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정관에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③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제96조의3(합병·분할의 절차) 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재단법인은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은 제2항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의4(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합병할 법인의 한쪽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각 법인의 회의예정일
2. 합병을 할 날
3.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존속하는 법인에 취임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존속하는 법인에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합병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각 법인의 회의예정일
3. 합병을 할 날
4.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96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3.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4. 설립되는 법인에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분할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2.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항

제96조의6(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법인은 제96조의3제2항의 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의 2주일 전부터 합병·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2. 각 법인의 최종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② 사원 또는 법인의 채권자는 업무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7(채권자보호) ①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이 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8(합병·분할의 등기) ① 합병의 경우에는 제96조의7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분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분할 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를, 분할 후에 신설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9(합병·분할의 효력발생) 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법인의 분할은 분할 후에 존

속하는 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제96조의8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6조의10(합병·분할의 효과)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 전의 법인채무에 대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6조의11(합병·분할무효의 소) ① 합병 또는 분할의 무효는 각 법인의 사원·이사·감사·청산인·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정하여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96조의8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96조의12(합병·분할무효의 등기) 합병 또는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이나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의 변경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회복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13(합병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의 공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법인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합병한 때의 각 법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6조의14(분할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96조의15(판결의 효력) ① 합병 또는 분할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그 확정 전에 생긴 법인과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6조의3제3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

9. 제96조의7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허가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u> <u>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u> <u>1. 3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u> <u>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u> <u>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u> <u>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u> <u>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u> <u>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u> <u>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u>

<신 설>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이 目的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신 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의2(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 및 제97조에 따른 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장(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資産에 關한 規定
5. 理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定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 ① (생략)
- ② 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財團法人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設立者나 理事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設立의 趣旨를 參酌하여 그 目的 其他 定款의 規定을 變更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인가를-----
-----.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

-----인가를 받
아-----

할 수 있다.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① 法人
設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3
週間內에 主된 事務所 所在地
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設立許可의 年月日
5. ~ 9. (생략)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前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할 事項으
로 官廳의 許可를 要하는 것은
그 許可書가 到着한 날로부터
登記의 期間을 起算한다.

第70條(臨時總會) ① · ② (생
략)

③ 前項의 請求있는 後 2週間
內에 理事가 總會召集의 節次
를 밝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한
社員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
를 召集할 수 있다.

第77條(解散事由) ① 法人은 存立
期間의 滿了, 法人의 目的의 達
成 또는 達成의 不能 其他 定
款에 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破

-----.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① ---

-----인가-----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設立인가-----

5. ~ 9. (현행과 같음)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

-----인가-----

--인가서-----

-----.

第70條(臨時總會)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인가-----

-----.

第77條(解散事由) ① 채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
다.

産 또는 設立許可의 取消로 解
散한다.

② 社團法人은 社員이 없게 되거나 總會의 決議로도 解散한다.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생략)

② 定款으로 歸屬權利者를 指定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指定하는 方法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理事 또는 清算人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그 法人의 目的에 類似한 目的을 爲하여 그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그러나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總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
생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

3.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

② 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사원의 부존재

2.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한 해산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현
행과 같음)

② -----

인가를

-----.

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4절의2 합병과 분할

제96조의2(합병·분할) ① 법인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간의 합병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단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정관에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45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③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제96조의3(합병·분할의 절차) 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신 설>

재단법인은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은 제2항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의4(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합병할 법인의 한쪽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각 법인의 회의예정일

2. 합병을 할 날

3.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신 설>

4. 존속하는 법인에 취임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존속하는 법인에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합병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제96조의3제2항의 합병승인을 위한 각 법인의 회의예정일

3. 합병을 할 날

4.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96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1.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2.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3.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4. 설립되는 법인에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로서 취임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분할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2.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항

제96조의6(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법인은 제96조의3제2항의 승인을 위한 회의예정일의 2주일 전부터 합병·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1.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2. 각 법인의 최종의 재산목록
과 대차대조표

② 사원 또는 법인의 채권자는
업무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제1
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
구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7(채권자보호) ①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
병 또는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별
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
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
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
는 때에는 법인은 그 채권자에

<신 설>

<신 설>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이 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8(합병·분할의 등기) ①

합병의 경우에는 제96조의7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분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은 해산등기를, 분할 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법인은 변경등기를, 분할 후에 신설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9(합병·분할의 효력발

<신 설>

<신 설>

생) 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법인의 분할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제96조의8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6조의10(합병·분할의 효과)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 전의 법인채무에 대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6조의11(합병·분할무효의 소)

① 합병 또는 분할의 무효는 각 법인의 사원·이사·감사·

<신 설>

<신 설>

청산인 · 관리인 ·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정하여 소(訴)로써
만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96조의8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6개월 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96조의12(합병 · 분할무효의 등
기) 합병 또는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분사무소 소
재지에서 합병이나 분할 후 존
속한 법인의 변경등기, 합병이
나 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회복
등기,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
다.

제96조의13(합병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합병을 무효
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법
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

<신 설>

<신 설>

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 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합병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의 공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법인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합병한 때의 각 법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6조의14(분할무효판결확정의 효과) ① 법인의 분할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 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신설 법인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 전의 상태로 복귀한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96조의15(판결의 효력) ① 합병 또는 분할무효의 판결은 제3자

第97條(罰則)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清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u> <u>② 제1항의 판결은 그 확정 전에 생긴 법인과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第97條(罰則)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제96조의3제3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u> <u>9. 제96조의7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합병 또는 분할을 한 때</u>
---	---